

교육의 機會均等 概念의 教育政策的 示唆

李 淳 珩

I 序 論

인간이 그 스스로에 대해 자신의 存在條件을 규정하는 중요한 命題의 하나는 누구나 平等하게 被造된 獨特한 存在로서 그 獨自性(uniqueness)을 실현할 權利를 가지고 있다는 信念이다. 이것은 民主社會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理念的 基底가 된다. 우리가 教育을 民主社會 發展을 위한 주된 機能으로 이해했을 때, 教育역시 民主化的 理念을 그 궁극으로 지향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모든 教育的 過程도 그 이념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民主教育의 주된 理念的 指標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民主社會 市民이면 누구나 人種, 性別, 家門, 階層, 經濟的 處地 등에 의해 差別받지 않고 人間으로서 그 成長에 필요한 教育의 惠澤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合議하는 데서만 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教育은 한 個人的 成長만이 아닌 福祉社會의 理想으로 접근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教育의 機會가 市民 各者에게 均등히 주어져야 한다는 명제는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民主社會란 集團知의 成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므로 그 社會가 거느리고 있는 個個市民의 潛在力을 어느 정도 發顯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社會發展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러면 均等한 教育機會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즉 教育의 機會均等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우선 잠정적으로 教育의 均等이란 「各者가 自己成長에 필요한 固有한 成長條件을 가지겠다는 主張」으로 이해해 두고자 한다. 新憲法 27條 1項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均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인간 모두의 보편한 要求를 正當하게 具現하고자 한 法的 合意의 表現이며 教育法 81條에도 「……능력에 따라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各級別 學校를 設置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말하자면 教育的 配慮가 性別이나 地域, 또는 社會的 身分, 經濟的 地位등에 구애됨이 없

이 制度上으로 충분히 베풀어져야 함을 法的으로 보장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국민의 教育權이 法的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나를 문제시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民主政治가 교육받은 市民의 寄與와 牽制의 調和에 의해 그 성과가 좌우됨을 유념할 때, 이는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지극히 타당한 질문이지만 보다는 教育의 機會均等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다른 데 연유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法的 水準에서의 問題라기 보다는 그 理念이나 法精神이 政策上의 未治으로 하여 教育實際上에서 빚어내는 그 差別이나 隔差의 상황에서 문제의 所在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하간 이러한 논의는 人間尊嚴性 그 본연의 신념에서 연원하는 根源的 質問이면서 동시에 理想社會의 지향을 점점하고자 하는 현실의 尺度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不遇靑少年의 未進學問題나 社會階層 또는 都市와 農村間의 教育隔差나 機會의 不均衡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만이기는 보다는 그 衡平의 課題가 보편한 인간의 이상과 사회발전의 척도가 돼주고 있기 때문에 못지 않게 중요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教育의 機會均等문제가 모든 교육문제의 關鍵이 되는 까닭도 이런 脈絡에서 넓게 이해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의 教育現實에 있어서 名門大學کم플렉스를 정점으로 하는 學校 平準化 문제나 再修者의 누적 또는 課外禁止등이 가장 심각한 社會問題를 이루는 原因도 실은 교육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均等하게 주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갈등현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잘 알다시피, 교육문제의 性質은 다른 여러 社會의 機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복잡하기 이를데 없다. 또 이같은 複合性外에도 교육의 機會均等 문제에는 더욱이 人權과 平等思想에 관한 價値規範이 그 意味의 屬性으로 內包되고 있기 까닭에 그 概念的 理解가 그리 수월한 것이 아니다. 차츰 살피게 되겠지만 이것은 그 개념적 접근이 信念과 教育現實의 二次元에 걸쳐 고루 남득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基低가 광범한 屬性 때문에 그 接近過程이 다면적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

本稿에서는 教育의 機會均等概念的 理論的 接近을 위해 平等과 機會均等の 概念을 그 기초로 고찰하고, 이어 교육의 機會均等으로서의 平等教育의 概念的 接近方式에 관한 理論的 觀點과 그 推移를 논의하면서 아울러 教育機會均等の 개념에 비추어 韓國教育의 實際的 問題에 주는 몇가지 政策的 示唆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Ⅱ 平等과 機會均等の 概念

1. 平等의 概念

教育의 機會均等に 대한 理想은 민주국가의 교육에 있어서 대단한 比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學校로서는 學生들에게 이러한 교육기회의 均等を 制度로서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

능가가 모든 教育的 過程을 결정하는 데 주된 教育的 指標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過程은 학생들이 각자 그 能力에 고유한 差異를 보이고 있고 또 각자 처한 社會的 位置가 서로 다를 것을 인정하면서 이에 적합하게 또는 능률적으로 대비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그 過程의 決定과 施行에 이들을 平等하게 待遇해야 된다는 신념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 가운데에는 크게 모순된 假定이 담겨져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 「人間은 事實에 있어서 平等하지가 않다. 그러나 人間尊嚴性이란 本質에서 볼 때 同等하게 待遇해야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事實의 記述과 價値의 主張이 묘한 相容을 이루고 있다. 後者의 陳述은 인간의 不平等을 전제한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겠는데, 잘 알다시피 人間理解에 관한 科學의 여러 證據를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生理·遺傳的 性質이나 또는 社會的 特性을 포함하는 여러 部面에서 서로가 同等하지 않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平等하다고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우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平等이란 事實的, 記述的인 面에서의 概念이라기 보다는 價値的, 規範的 概念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¹⁾

그런데 평등을 이와 같이 事實과 信念의 상호 갈등되는 理念要素를 간직한 것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이를 학교의 教育目標로 번안하고자 할 때, 그 원리적 適用의 혼란을 정당시킬 수는 없다. 적어도 우리는 교육의 실체에 있어서 한편으로 學生個個人的 個人差의 特性을 高揚시키면서 아울러 그것이 差別아닌 均等한 機會의 賦與라는 面에서 그 特徵을 實現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機會均等の 目標란 민주사회가 갖는 開放性의 이상과 연결되어 있다. 개인들은 그들이 갖는 特性이나 地位가 자기의 出生이나 社會的 條件에 따라 결정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 目標의 抽出은 각자가 그 條件에 의해서 成長이 억제당하지 않고 그가 지닌 바 潛在力에 따라 마음껏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 能力을 발휘할 기회가 均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合意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個人差의 要求도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타고난 特質만이라기 보다는 그가 속하고 있는 社會階層의 潛在力에 의해서 조건지워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개인차란 적어도 상대적으로 劣等한 比較를 위한 準據로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잠재되고 있는 그만의 獨特한 能力을 보다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人間觀이 土臺로 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학교가 階層이나 知能, 特殊能力 등에 따르는 建設적인 差別的 教育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념들의 具體的 適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쨌든 차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의 기회균등 사이의 兩價的 딜렘머는 人間平等, 그 矛盾된 假定에서 빚어내는 불가피한 課題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자기 「다른」 學生들을 위한

1) 李敦熙, 教育法學概論, 博英社, 1978, p. 158-59.

「다른」教育의 要請을 학교가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 하는 현실적 문제에서 平等의 概念的 照準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것이다.

우선 첫째로, 平等에 관한 社會學的 立場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平等 또는 不平等에 관한 社會學的 論議는 대별하여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²⁾ 機能主義的 階層論과 맑시스트의 階級論이 그것이다. 不平等 自体를 하나의 社會現象으로 받아들이는 데 兩者는 異議가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이 社會維持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前者가 이같은 機能的 必要에서의 不可避性을 인정하여 불평등한 構造 속에서 기회의 균등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를 중요시하는 데 대하여, 後者는 이를 궁극적으로 극복하지 않아서는 課題로 내세우는 데에 그 立場의 차이가 있다. 맑시스트들처럼 不平等을 私有的財產이나 타인의 擄取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진, 아니면 人間의 出生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진 간에 社會的 分化和 각각의 職業的 位置는 位階性을 成立시키지 않을 수 없고 能力의 評價에 따라서는 差等한 成就가 불가피하게 초래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과연 平等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그 꼬리를 쉽사리 감출 것 같지 않다.

그런데, 前述한바, 사람은 서로 다른 特性을 지닌 채 創造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事實이지만, 모든 사람이 平等하다는 理論은 心理學的 諸 發見에 의해서 보면 근거없는 虛構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인간은 누구나 平等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하는 주장은 合議에 근거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價值主張의 要求임에 틀림없다. 다시 말해서 그 能力이나 位置가 불평등하게 주어졌지만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문제이겠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애 政治的으로 同等한 投票와 法律的으로 衡平한 權利를 요구하며 또 經濟的으로는 財富의 分配와 그 機會의 保障을, 그리고 道德的으로는 人間이 手段으로서가 아닌 目的으로서 대우되어야 한다는 등 여러 면에서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平等의 概念 要素는 여러가지 局面에 걸쳐 다양하게 複合되어 있음을 暗示하는 것이다.³⁾

實際的으로도 平等은 그 개념의 多義的 解釋을 불가피하게 만드는데, 사실에 있어서 인간이란 각기 다른 것이라면 平等은 個人의 天賦的인 能力에 따라 決定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反面에 무엇을 獲得하거나 享有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동등한 機會를 確保받아야 하겠다는 주장도 동시에 가능하다. 이물主觀的 平等(subjective equality)과 客觀的 平等(objective equality)으로 나누어 생각한다면⁴⁾, 주로 社會的으로 平等이 문제가 되

2) 張夏鎮, “不平等과 機會構造,” 현상과 인식,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80. 3, pp.119-20.

3) Herbert McClosky, “Consensus and Ideology in American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No.58 1964. 6, pp.362-63.

4) 韓培浩, 理論政治學; 政治行動의 要因分析, 一潮閣, 1975.

는 경우란 能力이나 位置, 條件이 劣勢에 놓여 있는 狀況, 즉 客觀적 평등에서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앞서 平等의 概念要素의 多義的 局面을 이에 연관시켜 보면, 政治的, 法的, 經濟的 側面에서의 平等은 最少限에서 弱者의 境遇를 保護한다는 意味에서의 「權利的 主張」이라 할 수 있고 道德的, 文化的 側面에서의 그것은 尊嚴한 存在로서의 人間 그 以上에 어떤 價值的 凌加도 부정하는 「價值的 主張」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두 主張의 목소리가 平等의 差別에 대해서는 남과 대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보다 平等의 問題가 客觀性에 강조를 뒤야할 것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

둘째로, 平等의 概念把握에 있어서 그 差異를 구별하려는 하나의 시도는 用語의 사용을 두고 분석하는 意味論的 立場에서의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코미사르(Komisar)등에 의하면 그는 평등을 「同一로서의 平等」(equal as fitting)으로 그 의미를 구분한다.⁵⁾ 가령, “같은” 수준의 학생이라거나 “같은” 책, 또는 “같은” 教授方法 등과 같이 쓰이고 있는 경우, 이것은 記述的인(descriptive) 用途로 쓰여지고 있지만, 교사는 양쪽의 분쟁을 동등하게 다루었다든가 또는 두 지원자에게는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다든가 하는 경우, 이것은 사실에 관한 記述이라기 보다는 어떤 適合性에 대한 판단이라거나 規定의 適用에 대한 効力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앞의 合意와는 다른 進술로서 여기에서 쓰인 “同等하게”나 “똑같이”의 경우,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不公平한 待遇라는 비난이나 책망이 성립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공평하다고 承認한다든가 또는 비난, 책망하는 따위는 그것이 적절하다거나 또는 타당치 못함을 책하는 것으로, 이때의 同等의 의미는 同一性(sameness)이라는 뜻과는 機能이 다른 適合性(fittingness)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前者의 경우는 주로 나타나는 事物의 特徵的인 面을 밝히려는(to identify) 比較的인 目的이 前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比較의 屬性을 갖는 다양한 事物이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어떤 사물의 特性에 관해서 이려저러한 目的으로 「比較」의 同等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것이 타당하다거나 적합성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事物에 대한 「評價」와 관련이 있는 用語이다. 동등한 대우나 공평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적용된 규정 이 올바르게 어떤 규칙에 일치한다는 것을 뜻하며 아울러 그 적용된 규칙은 그 대상(사람)의 적절한 특징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엇이 적합하나 아니하나 하는 것은 平等이 적용될 대상이 지니고 있는 그 特性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그것은 그 規定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도 검토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합성의 개념(the fittingness concept)은 對象이 어떤 特性을

5) B. Paul Komisar and Jerrold R. Coombs, "The Concept of Equality in Education," in Charles A. Tesconi, Jr. and Emanuel Hurwitz, Jr. (ed.) Education for Whom?; The Question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Dodd, Mead & Company, New York 1974, pp. 67-68.

가지고 있느냐(subject characteristics) 하는 문제와 적용될 規則이 타당한가 아니한가 하는 규칙의 적합성(propriety of rules) 여하에 따라 不確定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⁶⁾ 그리고 適合性的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것이 어떤 주어진 事例에 들어 맞도록 道德적으로 올바른 원칙을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平等에 대한 同意가 道德的 行動이라거나 倫理性을 수반한다 함은 이런 文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學校補助金에 대한 衡平(equality)을 논의하고 있다면 무엇이 타당한 配分을 이루게 하는 것인가에 協約(規定)이 없고서는 그것은 무의미하다. 요는 적합성의 개념은 평등에 대한 원래의 명확한 定義가 있어서 教育的 選擇을 지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택하는 信念이나 合意가 그 平等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論理的 判斷이 평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前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社會的, 政治的 理論에서 平等이란 말도 흔히 記述的인 面에서 보다는 規定的, 또는 處方的(prescriptive)인 面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앞에서 말한 바 萬인이 平等하다는 말은 그들이 어떤 똑같은 屬性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屬性에 비추어서 볼 때 똑같이 處遇되어야 한다는 處方的인 뜻을 갖고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同一性이 개념이 記述的(descriptive) 屬性을 갖는 것에 비해 適合性的 개념은 이와는 그 기능이 다른 歸屬的(ascriptive) 의미의 部分인 것이다.

세째로, 평등의 개념으로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관념의 하나는 宗教的 脈絡을 含意한 人權으로서의 개념이다. 이는 基督敎的 倫理規範에 의해 뒷받침되는 平等思想으로서, 하나님을 창조한 被造物이란 存在의 根源의 意味에서 보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同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靈性を 지녔으므로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며 하늘 아래 똑같은 것은 아무 데도 없는 唯一無二한 存在이다. 그러므로 인간 그 자신은 어느 누구에 대해 보다 上일 수도 없고 下일 수도 없는 尊嚴한 絕對的인 것이다.

이와 같은 天賦的 基本權으로서의 平等思想에 근거해 보면, 人間存在에 대해 어떤 比較나 優劣을 가름하는 準據나 規範이 수락될 수는 없고 그것은 결국 法앞에서의 平等이나 同等한 待遇, 또는 同等한 機會賦與등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⁷⁾ 말하자면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正體意識(identity)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正體意識(identity)이 平等(equality)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同等한 대우를 결정하는데 어떤 基準이 필요하다면 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權利가 주어졌다고든가 또는 판단한 權利를 지닌다고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用語의 定義는

6) Ibid, p. 74. 그들은 이것을 平等概念의 설명에 있어서 不確定性(indeterminacy)라고 부르고 있다.

7) 吳天錫, “平準化와 秀越의 理論,” 敎育學研究, 제11권2호, 1973, 10, 韓國敎育學會, pp. 1-9.

아니다. 무엇을 成就하는데 同等한 權利란 말은 어디까지나 성취할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他人과 더불어 平等하다고 하는 것은 他人과 더불어 성취할 권리를 共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權利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⁸⁾ 물론 이러한 권리를 평등의 준거라고 말할 때는 적합성의 전지에서 보아 평등을 적용하는 준거로서의 그 권리가 道德적으로 正常化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法앞에서의 平等이나 同等한 處遇 또는 同等한 機會의 부여가 의미하는 것은 權利, 즉 人權面에서의 要求라 할 수 밖에 없다. 달리 생각하면 人間이라는 점에서는 어디까지나 同一해야 하며 民主市民이란 면에서 또는 女子 혹은 大學生이라는 範疇에서 同一해야 한다고 이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모든 인간은 同一해야 한다가 아니라 同一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나도 大學生이니까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대우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個體들이 속한 어떤 範疇에서의 그 同質性을 基本屬性으로 고려하고 있는 데서의 客觀的 主張인 것이다.

여기서 잠깐 「같은」, 「同等한」 또는 「平等한」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論理的 機能에 대한 李敎熙의 檢討를 그대로 引用해 보겠다.⁹⁾

사실상 “같은”이라는 말은 “A는 A와 같다”의 경우 처럼 전적으로 同一한 것을 가리는데 사용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전적으로 동일한 사물은 그 사물 자체밖에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단지 “비슷한” 것일 뿐이다. “비슷한”이란 말은 “같은”이라는 말과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구별되는 말이다. “같은”이라는 말은 두개 혹은 그 이상의 個體들의 論理的 關係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個體들의 同一性은 엄격한 意味에서 가능하지 않으며 단지 個體들의 가진 特徵에 적용되는 말이다. 두개의 사물들이 어떤 特徵을 같이 共有하고 있고 어떤 特徵은 달리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特徵을 어떤 “觀點” 혹은 “範疇”에서 고려하느냐에 따라 두개의 個體들을 同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결국 個體들이 서로 「比較」할 수 있는 觀點 혹은 範疇를 성립시키기만 하면 두 個體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인간은 똑같은 能力이나 性別, 職業 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지만,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똑같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서 똑같이 대우하며, 똑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똑같이 대우하지 않은 것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은¹⁰⁾ 特徵으로서의 人間の 범주를 고려한 同質性(sameness)의 次元에서 人間の 平等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平等에 있어서의 이같은 個體들의 同質性을 문제삼고 있다면 그것은 同一性의 模型을 基本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人權으로서의 同等한 待遇나 同等한 機會의 開放이라는 문제는 앞서말한 適合性

8) B. Paul Komisar and Jerrold R. Combs, Ibid, p. 77.

9) 李敎熙, 前揭書, p. 159-60.

1) 上揭書, p. 162.

(fittingness or appropriateness)의 면에서 더 명백히 검토될 수 있다. 適合性으로서의 平等이란 두 사람이 똑같지 않은 점을 알면서도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면 어떤 基準에 어긋나 그 公正性(fairness)의 缺如를 意識하는 데서 派生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尊嚴性的의 觀點에 있어서 人間의 범주는 最少限의 平等을 요구한다. 同一性이, 人間은 최소한도로 존엄한 존재라는 同質的인 점에서 대우의 衡平에 일률적인 拘束性을 부여하지만, 性別이나 能力, 適性등에서는 異質的이라면 여기에다 共히 “다같은”(同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어도 公平한 일일 수는 없다. 同質的인 면에서만 人間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異質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리스먼(Riesman)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이 점에 대해 적절한 意義를 부여하고 있다. 즉 그가 「인간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다. 사람들이 서로 같으려고 할 때 社會的 自由를 잃고 개인의 自主性을 상실하게 마련이다」¹¹⁾라고 한 말은 人間의 特性이나 個人差에 대한 正當한 해석을 가한 것이다. 모든 人間이 똑같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는 상상만해도 불유쾌한 일이며 同一한 것이 아닌, 한 범주 內에서의 그 異質性은 個個人間을 존엄한 人間으로 있게 하는 實存的 所與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同一한 存在가 아니라는 사실은 더욱 소중한 條件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같지 않은 것을 同等하게 만들고 있는 限劃一性(uniformity)을 불러들이게 마련이고, 따라서 適合性的의 模型에서의 平等의 의미는 “같은”의 意味라기 보다는 各者의 內在된 特性에 “적합한” 또는 지닌바 弱點이나 缺陷에 대해 무시하거나 다치지 않는, 相對的으로 “公平한” 대우를 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適性에 맞게 대우되었느냐 또는 素質이나 可能性이 상대적으로 差別받지 않고 公正하게 대우되었느냐 하는 것은 人間이란 個體의 內的 妥當性에 비추어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民主主義의 基本 原理로서의 平等은 “올바른” 대우나 “공평한” 기회의 부여로 이해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또 한편 “올바른”이나 “공평한”이란 말은 道德的으로 正當化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選擇의 基準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무엇이 人權의 적용에 있어 그 대우나 기회의 부여가 적합한 것임을 판단해 줄 수 있는가? 아마도 그 過程에는 道德的, 倫理的 判斷의 條件이 成立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판단의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경우, 동등한 대우라든가 하는 기준은 事實的 記述이 아닌 어떤 處方的 또는 道德選擇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기준의 설정은 價値判斷에 속하는 일로서 무엇이 平等이고 아니냐의 기준은 결국 價値判斷에 의해 적용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와 같이 平等의 接近에 있어서는 價値體制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能力別 學習集團編成이 非民主的인 아니냐의 爭點도 이미 선택된 가치 판단에 대한 그 기준의 적용을 문제삼고 있다고 보겠으며 그 초점은 각자가 지니는 內的 特性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적합하다

11) Riesman, D., *The Lonely Crowd*, New York, Doubleday, 1955, p.349.

돈가 아니면 공정한 대우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人間이나 社會가 不平等하다는 것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태가 존속하는 존엄한 인간 모두의 幸福이나 社會正義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平等이 人間關係를 규율하는 하나의 理想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되는 當爲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生活規範으로서의 平等은 價值判斷에의 合意에 기초해서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規範으로서의 平等은 그 實現을 위한 通路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平等自体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평등의 개념은 人間特性이 서로 對(同)等하지 않다는 事實에 근거하여 差別的으로 다루어져야 正當하다는 心理的 平等의 문제와 天賦의 人權에 기초한 平等한 待遇를 생활의 이념으로 삼지 않아서는 정의로운 社會의 실현이 어렵다고 하는, 價値의 合意를 담고 있는 社會的 平等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겠다. 바꿔 말하자면 脫價値 對 價値, 主觀 對 客觀의 갈등이 그 속에 간직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教育은 人間意識을 提高하여 平等社會를 실현하는 중요한 機能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平等의 概念은 教育에 대해 個人의 고유한 能力의 자유로운 伸張을 통해 그 心理的 特性을 高揚해야 하는 면과 또 하나는 人間尊嚴의 精神을 드높이기 위해 보다 不利한 쪽에 社會的 關心을 적극 施與함으로써 制度的으로 그 隔差를 줄여야 하는 義務를 시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不平等이란 社會的으로 반드시 補償되지 않으면 안될 것임을 시사한다면 평등은 사회가 천부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社會正義의 문제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다.¹²⁾

2. 機會均等の 概念

교육의 機會均等を 논의하기에 앞서 機會均等の 概念을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平等과 마찬가지로 機會均等を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플라메나츠(plamenats)는 기회의 균등을 權利의 地等과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으며 또한 행사할 수 있는 權利가 주어져 있는 곳에서만 平等한 機會가 存在하게 된다고 한다.¹³⁾ 그러므로 기회의 균등이란 機會所有의 平等으로 代置될 수 있으며 自由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機會가 法的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平等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71.

13) John P. Plamenats, "Equality of Opportunity," Aspects of Human Equal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6, p. 81을 인용한 張夏眞, 前掲論文, p. 122. 再引用.

기회균등에 대한 또 하나의 立場은 個個의 潛在可能性을 開發할 수 있는 機會로 보는 觀點을 들어 볼 수 있다.¹⁴⁾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과는 다른 資質이나 能力 또는 特性을 가졌다. 그런데 인간은 그가 처한 地位나 條件, 環境등에 따라 이 特質들이 제대로 發顯되기도 하고 抑制되기도 한다. 歸屬의 社會에 있어서는 이러한 機能이 分明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人間은 그 成長이나 삶의 實現을 위한 機會를 확보하고자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그리하여 成員 모두에게 個個人이 지닌 充足적 能力을 고루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그 기회를 허용해 주는 일이 平等의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이러한 視角은 앞서 平等에 대한 同一性이나 適合性的 概念의 논의에서 보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면 機會均等은 「權利所有機會의 平等」과 「能力開發機會의 平等」의 두가지의 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것들은 각각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지 않는 惠擇의 保障과 개인의 능력과 개성에 따라 그 選擇의 保障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¹⁵⁾ 결국 기회균등은 缺乏의 施與나 障礙의 解止와 같은 消極的 意味가 우선 전제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개개인의 能力이 社會의 需要에 의해 결정되는 면도 없지 않음을 감안할 때, 그 능력의 실현을 위해서는 機會의 通路를 적극 확대하는 通路의 開放(open to access)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는 이같은 사회적 장애의 극소화가 社會的 移動(social mobility)을 촉진시키는 일이 중요한 政策的 課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교육은 民主社會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社會的 地位를 充足시키기 위해 學生들을 능률적으로 選拔, 學校教育에 參與시키는 일(educational attainment)을 政策의 基調로 삼아왔고 義務教育이나 無償教育을 擴充하여 모든 국민이 적어도 一定期間의 教育을 均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制度的 實現을 教育機會均等의 주된 裝置로 구축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教育의 機會均等은 制度的 裝置만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교육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면 그것은 教育資源의 均等한 配分이나 共通한 教育課程을 제공받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學生들의 最終成就 結果를 놓고 볼 때 여전히 어떤 隔差를 보이고 있다던가 적어도 差別教育(differential education)에 대한 正當性的 논의등은 진정한 교육기회의 均등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문제시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다음 節에서는 기회균등 개념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났는가를 밝히면서 平等教育의 問題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4) 黃性模, 理代社會思想史, 進明文化社, 1964, p. 92.

15) 韓眞信, 韓國青少年의 教育隔差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0. 2, p. 32.

16) Silver, H. (ed.),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A Reader in Social Class and Educational Opportunity, London, Methuen Co, 1973, p. 22를 引用한 上掲書, p. 32.

Ⅱ 教育에 있어서의 機會均等

一 平等教育의 問題

교육의 기회균등은 今世紀初 이래로 특히 미국의 教育財政專門家들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어 왔지만 그 進度에 있어서는 매우 완만하다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美國의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보면 1960年代는 教育의 機會均等(the equaliz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과 學校財政의 衡平(the equity in school financing) 問題가 論議의 最前線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1964년의 民權法(Civil Rights Act)를 起爆으로 하여 經濟的 機會에 관한 法令(Economic Opportunity, 1964) 및 65년에는 初·中等教育令등이 차례로 이어졌으며, 66년의 교육의 機會均等に 관한, 이른바 콜만(Coleman) 報告書를 정점으로 하여 67년에는 와이즈(Wise)에 의한 貧富學校論, 그리고 70년에는 쿤스(Coons)등이 私立學校와 公教育論등을 제기함으로써 기회균등은 가히 화염에 휩싸인 느낌을 불러일으켰다.¹⁷⁾

대표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콜만報告書에 의하면 그는 教育의 機會均等 概念의 發展 및 그 推移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¹⁸⁾

- ① 노동이 허락되는 연령까지 無償·義務教育을 제공하고(無償·義務教育)
- ② 社會的 背景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共通의 教育課程(common curriculum)을 제공하며(教育課程의 共通性)
- ③ 여러가지 背景이 다른 子女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하며(同一地域內의 分離·差別의 禁止)
- ④ 公共稅金이 學校運營財源을 제공함으로써 地域內 均等を 유지해야 한다.(學校 運營財源의 均等한 配分)

기회균등이 이러한 概念의 要素들에 의해 接近되어 왔다는 것은 逆으로 말해서 이같은 조치를 制度的으로 취함으로써 教育의 機會均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음을 의미한다.

教育의 機會均等的의 이러한 推移는 주로 農村에서 발전되어온 것으로서 점차 社會가 變動함에 따라 그 矛盾이 밝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 接近方式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모를 나타내었는데, 이를 다음 몇가지로 줄여볼 수 있다.

첫째, 무상·의무교육 실시가 교육기회균등의 주요 契機가 되어 왔는데 이것은 教育機會의 不均等的의 根源이 주로 經濟的 差等이나 그 缺乏에서 거인된다는 觀念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제

17) Johns, R. L., "Equality vs. Equ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The Educational Forum: A Kappa Delta Pi Publication, Volume XLIV, No. 1, 1979, p. 119.

18) Coleman, J. S.,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38, No. 1, 1968, pp. 7-22.

적 필요를 충족시킨다고해서 교육에 관련된, 社會構造 속에 內在하는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령 균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勞動階層에 속한 어린이들은 그 기회를 이용함에 있어 자연히 限定된 結果를 가져왔고 그리하여 경제적 문제는 기회균등의 必要條件은 되지만 充分한 條件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 모든 어린이들에게 特定の 教育課程을 고루 이수시키기만 하면, 즉 共通課程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회균등이 실현되리라는 관념에 대해서도 점차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회균등의 不利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은 그들이 教育內容面에서 남과 같은 惠澤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質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것이 기회균등의 不利를 克服하는 方法이란 견해를 갖게 되었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데 이르러서는 문제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어린이와 가정의 문제이다. 또 근래에 이들 非進學靑少年들이 고등학교에 대량 유입함으로 말미암아 共通教育課程의 實現만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점차로 進學學生과 非進學學生 間에 요구되는 教育課程 面에서 새로운 갈등을 맞게 되었고 특히 職業分野로 진출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多樣的 課程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될 또 다른 必要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소수와 다수간의 기회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기회균등은 모든 學生들이 자기가 원하는 코스에 適合한 課程을 提供받는 것이 균등한 혜택을 누리는 結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종래까지는 學校差가 갖다주는 受惠의 不利 때문에 균등한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施設이 同等하거나 教師의 水準이 비슷한 學校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人種問題上 빚어진 1896년의 大法院判決은 같은 地域에 있는 學生이라 할지라도 「分離시키되 均等한(seperate but equal) 施設이라는 政策을 취해온 것이 先例였었다. 그러나 1954년에 와서 이것은 違憲이란 번복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學校施設의 平準化나 教師問題가 解消되었다 하더라도 人種差別로 인해 分離·受容하게 된다면 기회균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결국 같은 教育課程을 施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시설이나 교사수준의 동질화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教育的 成果(educational outcomes)가 달라질 수 있음을 假定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는 同等한 教育成果를 어떻게 보장받느냐 하는 문제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究明하는 가장 적절한 準據로 들어나게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學校教育的 成果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의 기회균등개념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해하는 새로운 地平을 열어준 듯 하지만 이는 오히려 現存하는 教育機會의 不均等を 더욱 예민하게 評價해준 以上の, 보다 구체적인 方案은 마련해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學校教育成果의 側面에서 보는 교육의 기회균등 개념

은 人種 또는 小數集團의 機會缺乏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아울러 人種統合에 의 해 定義되는 均等の 問題 더욱 중요한 개념요소를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네째,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중요한 입장의 하나는, 該當地域內에서는 學校의 運營財源을 均등하게 配分하는 方式으로서의 觀念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¹⁹⁾

① 교육재정면에서의 기회균등이라 하면 우선 각각의 어린이들에게 同一한 量이 補助金額을 支拂함으로써 기회균등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學生當 同等한 教育費支出이라는 문제는 正常兒에 비해 不利點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비의 지출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學生當 同等한 教育費支出이 반드시 교육의 기회균등이나 형평을 제공해 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② 또 한가지는 地域의 擔稅能力이나 學生의 富의 隔差에 따라 기회의 불균형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추어 만약에 學生當 支出되는 教育費의 量이 地域內의 稅金이나 學生들의 貧富程度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教育財政은 均등해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이나 학생에 따라 요구되는 타당한 교육비의 문제가 이러한 영향과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③ 그리고 教育財政은 납세자나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均등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것도 세금은 納稅者의 능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고 學生當 教育費 支出의 정도는 教育的 必要나 要素에 따라 決定될 余地가 있다면 특히 地域이나 學生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재정의 타당도는 각기 다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教育財政 投入의 문제도 기회불균등의 어떤 條件들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기회균등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程度에는 어떤 限界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기회균등에 접근되는 정도는 이들 教育的 投入의 均等만에 의해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짐에 따라 기회균등의 접근은 종래까지 投入의 質을 절대시하던 척도에서 벗어나 投入의 結果가 학교교육에 어떤 효과를 빚어냈느냐 하는 「成果均等の 質」을 더욱 문제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상 韓만이 행한 연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초기의 기회균등 문제는 無償의 公共資源을 얼마나 제공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점차 學校施設이나 資源의 配分과 같은 교육적 투입이 均등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책임은 학생들의 能力差나 家庭의 心理, 經濟, 社會的 環境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들의 成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게 되면서 결과의 均등은 학교교육에 미치는 여러가지 투입변인을 고려한 教育的 產出로 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게 된 것이다.

韓만에 의하면 結果의 均等(equality of resulty) 개념은 그 속에 두가지 다른 假定이 設定되

19) Johns, R. L., op. cit.

어있다고 지적한다. 교육의 기회균등 개념의 한가지는 우선 個個學生들이 同一한 背景과 能力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왔을 때의 教育 프로그램의 成果를 가지고 測定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成果가 자기 다른 投入要素를 지니고 있는 學生들을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했을 때 기회균등의 대안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완전히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同等한 教育의 質(equal educational quality)은 學校教育의 結果가 學生들의 學業의 成就나 態度 및 余他的 成果면에서 뿐만 아니라 不利한 小數集團의 學生들도 支配的인 다수집단의 學生들과 마찬가지로 同一한 結果를 가져왔을 때라야만 될 수 있다는 점을 둘째의 가정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產出의 均等(the equality of school output)이란 문제를 다시 機會均等의 두가지 개념, 즉 同一性和 適合性에 대비해 보면, 同一性은 學校의 施設이나 또는 費用과 같은 有用性(availability)에서 어떻게 均等함을 보여주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適合性의 개념은 자기 다른 能力이나 條件을 가진 學生들이 서로 어떻게 同一한 成就를 보여주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適合性의 개념은 教育成果에서 不均衡(inequality)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不平等性을 除去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고든(Gorden)은 이 문제를 극복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²⁰⁾ 그에 의하면 產出의 均등이란 학생 각자가 성취해야 할 일련의 最少 또는 基礎的 行動目標(minimal or basic set of behavioral goals)의 달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個個學生이 성취한 학습의 成果란 그가 처한 社會·經濟的 與件에 관계없이 장차 社會의 成員으로 참여하는데 필수로 요구되는 學習成就의 最低 基準을 指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教育을 받았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市民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즉 정치·경제·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끔 이들에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公同한 技術(common skills)을 틀림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最少限의 必要」(minimal needs)로서의 기회균등의 관점에 관해서는 그린(Green)도 같은 입장에서 지지하고 있다.²¹⁾ 不公平의 의미가, 예컨대 收入의 면에서 볼 때 最低水準의 創出

20) Edmund Gorden, "Toward Defining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Mosteller and Moynihan(eds), *On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New York, Vantage Press, 1972, Chap. 10.

21) Green, "Educational Opportunity," *Ibid.*, p. 141.

Jencks, Christopher and Others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1972.

을 요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教育的 惠澤의 受惠에 있어서도 기회균등은 最低水準의 成就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必要에 근거한다면 그는 教育的 惠澤이 配分되는 學校教育의 体制 아래서도 教育的 成就를 決定하는 水準이 存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 必要라고 하는 것은 社會集團間 分配의 均等化를 達成하는 데 필요한 資源(resources) 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生活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教育的 惠澤(minimum educational benefits)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見地에서 보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社會생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知識, 技術의 습득과 같은 基礎教育(basic education), 즉 最少의 成就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教育的 平等의 定義는 觀點에 따라 달라져 왔지만 機會의 均等に 대한 接近에 있어서는 대체로 人間의 尊嚴性和 獨自性を 그 理念으로 하면서, 地域間, 學校間 또는 學生間의 教育的 不均衡이나 隔差, 예컨대 施設, 教育費 등에서 어떻게 衡平을 기하느냐 하는 投入(educational input)의 側面에서, 나아가 學生의 能力이나 國家·社會의 必要에 따른 知識, 技術, 態度 등의 成就의 面에서 보는 產出로서의 結果의 均等を 문제시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²²⁾ 한마디로 機會의 均등이란 「選擇의 權利와 그 保障」 및 「選擇의 權利와 그 保障」으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겠는데, 選擇의 權利라 하면 고를 수 있는 自由를 뜻하는 것이며 選擇의 權利라 함은 不當한 差別을 받음이 없이 國家와 社會가 마련하는 惠澤을 고루 누릴 수 있는 權利를 말하는 것이다.²²⁾ 그러므로 教育의 機會균등에 대한 현재의 概念的 視角은 이제 物量的 條件整備의 量的 管理方式에서부터 學習成果面을 문제삼는 質的 管理方式에도 전환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사람은 能力에 있어서 각기 다르다고 하는 心理的 또는 社會·經濟的 爭點들에 대해 보다 높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IV 機會均等の 教育政策的 示唆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國民에게 그가 가진 信仰이나 性別, 社會的 身分 또는 經濟的인 地位등에 차별없이 그 能力에 따라 均등하게 教育的 惠澤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憲法이나 教育法등에는 이러한 理念이 法的으로 뒷받침되어 있지만 制度나 現實이 그 立法精神이나 機會均等 이념을 어떻게 政策的으로 具現시키고 있는지 檢討돼야 할 問題가 많다.

다음에 몇가지로 이를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22) 金永植, “教育機會均等の 概念的 基底,” 教育行政學研究會編, 韓國教育政策的 探索, 培英社, 1979, p. 101.

첫째,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상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年限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制度的保障을 要請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義務·無償교육의 制度化는 바로 이러한 理想을 반영한 기본 조치로서, 앞으로 그 制度的 擴充은 國民福祉의 觀點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近代國家는 教育받은 市民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나에 따라 그 발전이 좌우되기 때문에 人力資源開發의 필요에서 보아도 公教育의 擴大추세는 더욱 더 伸張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한 先進國을 중심으로한 中等教育의 義務化趨勢도 이제 그 보편적 이상이 되고 있는 만큼 國家의 必要도 점차 높아져가는 市民들의 教育權行使에 대한 意識과 合致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그 現代化가 보다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教育人口의 構造面에서 볼 때는 대체로 底邊이 넓고 上層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형이 보편적이다. 이 모형은 현실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누리기 위한 上部構造에의 接近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상층으로의 通路가 그만큼 제한되어 있는 制度的 構造는 점차 개방적으로 바뀌어져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開放社會에서는 教育水準이 社會身分의 上向의 移動에 원동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 보다도 강력한 상승작용을 한다. 한 개인의 교육수준이 社會的地位決定이나 收入程度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教育需要에 대한 誘因價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더욱이 개방사회는 市民個個人의 人間意識을 더욱 팽창시킬 것인바, 이제까지의 高級人力養成이나 엘리트教育이라는 制限的 教育機會에서 탈피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의 교육기회를 허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成長, 發達을 충분히 신장한다는 견지에서도 앞으로의 教育政策은 個個人에게 최대한의 教育的 發達을 가능하게 하는 發達的 教育觀으로 이제까지의 選拔的 教育觀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²³⁾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中學校教育의 義務化나 추첨제에 의한 高校入試의 平準化政策은 「모든 靑少年을 위한 教育」(education for for all youtt)라는 理想에 한걸음 더 접근한 것이고 국가사회가 그들의 성장을 용이하게 뒷받침하는 開放的인 教育體制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本質的 意義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年限의 教育的 施惠를 베풀어야 하는가는 몇가지 문제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 우선 바라는 대로의 국민모두의 교육수준을 충족시키자면 엄청난 費用이 요구될 터이므로 국가재정면에서 난점이 적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드시 이수해야 하는가도 많은 논의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당장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가 非進學者나 大學進學에서 탈락되는 再修生의 누적등을 유념할 때 제도상으로 교육을 大衆化하는 開放的 教育制度의 模型이 교육문제해결의 우선적 政策代

23) 金豪權, “多人數教授의 問題,” 李星珍外編, 未來社會의 人間問題, 培英社, 1979, p. 38-39.

案이 왜야 한다는 점도 原則的으로 異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義務教育의 年限擴大나 個個人的 教育水準을 높인다고 해서 기회균등의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脫學校化(deschooling)의 관점을 빌린다면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의 기회균등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대체로 교육은 學校라는 制度를 통해서만 그 公式性이 인정된다. 따라서 학교의 教育過程을 정규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專門性을 요구하는 경쟁에서 자연히 불리해지게 마련이므로 이들에게는 저절로 機會의 配分을 제한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²⁴⁾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제도적으로 학교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기회의 불균등이 저절로 해결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제도적 확충으로서의 교육의 기회균등의 문제해결은 그 자체내에 상승적 한계를 의식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교육결과와 相對的 隔差를 간과하지 않는다면 기회균등의 문제는 學校教育 內에서의 質的 管理에 그 視角을 內向化하면서 아울러 學校外教育도 새롭게 조명하여 教育全體的인 脈絡에서 이를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의 기회균등 개념은 學校成就의 質的 管理意識에 보다 초점을 두는 教育政策의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

기회균등이 접근방식이 成果均等이란 側面에서 문제시돼야 한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다. 결과균등적 접근방식은 卒業生의 產出이라는 終局的 時点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중의 教授—學習過程에서 學業成就의 質的 管理를 強化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基礎學力의 充實化도 새로운 角度에서 점검되어야 하고 卒業이나 資格試驗制度를 強化하는 方案도 機會均等의 見地에서 새로운 政策의 意味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學力이 產出上으로 適正水準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은 단지 評價의 문제일 수 만은 없다고 본다.

質管理政策의 보다 具體化를 위해서는, ① 學習者의 特性을 고려한 教育課程 또는 教材, 資料의 開發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 教科의 教材라 할지라도 A·B·C型 등으로 複本化하여 學生의 能力이나 學力隔差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해 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② 교육과정운영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또 학생들이 能力差, 地域差, 學校差에 따라서는 그 目標나 內容, 教育方法 등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하고, ③ 또 目標指向評價制度의 채택과 같은 教育評價方法의 革新도 수반되어야 한다. 相對比較評價에서는 상대적으로 隔差意識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個人的 能力水準에 따르는 進級이 허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無學年制(速進制)를 적용한다든가 學習不振兒의 補充등 탄력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기회균등의 원리에 훨씬 合致된다고 본다. ④ 中學校까지는 國民基礎教育의 관점에서 보아 國家的 水準에서의 最低學力成就水準을 가름하는 學力總評價制가 定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⑤ 教育學習方法의 現代化를 위해 技術工學的 學習

指導方式을 극대화 하는 敎員의 敎授能力 向上과 管理方案이 敎員研修制度에 적극 反映되어야 한다.

세째, 學生個個의 潛在能力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신장하는 敎育정책 구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敎育의 기회균등원리는 우리들에게 소위 能力別 敎育이나 差別敎育에 대한 正當한 理論的 根據를 제시해 주고 있으니만큼 이를 학교敎育에 적용함에 있어 보다 過當한 政策을 펼 것이 요청된다.

아직까지 우리의 학교敎育이 극복하지 못한 한가지 정책과제는 同質的 學習集團의 編成에 대한 터부이다. 아직도 우리는 個人의 秀越性을 伸張하는 엘리트敎育이나 能力別敎育에 대해 확고한 信念의 부족으로 하여 많은 敎育적 손실을 겪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民主主義는 個人差의 哲學이다. 學生 個個人의 能力差를 솔직히 인정하고 각자의 능력이나 특성에 있어 그 弱點을 보완하고 長點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敎育方法을 적용해 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는 國力의 培養과도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으며 確立적이지 아닌 多樣性이 존중되어지는 文化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기회균등의 原理的 示唆는 모든 靑少年에게 똑같은 敎育을 실시하여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學者가 될 수 없듯이 각 個人의 所興에 적합한 敎育은 당연히 다른 것이다. 각각 相異한 差別的 敎育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제공될 때에 비로소 기회균등의 진정한 의미는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吳天鶴도 말하기를 진정한 의미의 敎育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差別的 敎育을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敎育의 기회균등은 尙급차별적 敎育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²⁴⁾ 아울러 그는 平等의 原理 밑에서 행해지는 差別敎育이 非民主性을 범하지 않으려면 다음 몇가지 기준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즉, ① 학생에게 차별敎育이 실시되지 않으면 안될 原因(에 켜미, 知能, 成就度등)이 규명되어야 하고, ② 처방된 차별敎育이 학생들의 知的, 情緒的, 社會的 障礙(예로서 劣等感의 助長등)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과, ③ 차별은 상대적인 것이니만큼 敎科別 또는 어느 時間까지의 成就水準別에 따라 신축성 있게 행하여질 것과, ④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행할 것 등이다.

이런 의미에서 能力別 學習集團의 編成을 正當化는 觀點이 受諾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無試驗進學制度로 겪게된 학생들의 광범한 學力隔差를 줄이기 위한 한 代案으로서도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確立적이며 凡庸한 人間만이 아닌 秀越(excellence)의 多樣性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知的 秀越만이 秀越의 全部는 아니다. 運動技能面에서 卓越함도 있을 수 있고 指導力의 秀越이나 道德的 또는 社會性的 秀越도 學校成就에서 높게 評價될 수 있

24) 이반 일리치(김 남서 역), 敎育社會에서의 脫出, 汎潮社, 1979.

25) 吳天鶴, 前揭論文, p. 5.

어야 한다. 教科學習에서 충분한 適性을 보여주지 않는 青少年들에 대해서도 個個人的 독특한 潛在能力의 발현을 방임하지 않는 側面에서 卓越性を 살려 나갈 수 있도록 均衡의 의미를 정책적으로 再吟味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現행 學力評價中心의 教育評價制度를 대폭 개선하고 아울러 施賞制度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뚜렷한 英才育機關의 發達이 미흡하다는 점도 기회균등개념의 見地에서 보아 새롭게 검토되지 않아서 는 안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네째, 高等教育의 機會開放問題와 관련해 볼 때, 社會階層上이나 地域的 障碼로 機會均等の 不利를 감수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社會政策的 見地에서 그 격차를 해소하는 方案이 교육 정책수립에 적극 反映되어야 한다.

교육의 기회균등이 특히 문제가 되는 部門은 高等教育이나 專門教育의 領域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教育에 접근하는 기회가 個人이 지닌 能力과는 別個로 분리될 수는 없다. 後天的인 社會環境 要因, 예컨대 社會계층이나 경제적 지위, 地域的 不利, 父母의 教育程度, 性別 등에 따라 아직도 크게 制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高等教育 機關의 大都市偏在도 그 原因의 하나이고 在學生의 登錄比에 있어서 男女의 受惠程度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學力의 不足으로 인한 再修生의 문제만이 아니라 機會의 未達로 인한 未進學者들의 現實的 制約을 그대로 放置한다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리가 시사하는 점에 비추어 옳지 않다. 研究의 證據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父母의 社會經濟的 地位가 높거나 大都市에 살고 있는 學生들은 그 利点으로 大學進學의 機會를 더 많이 누리고 있고 또 父母의 教育程度가 높은 子女일수록 그들은 大學進學을 더 많이 격려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한 男兒 選好意識도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현격한 性別隔差를 초래하고 있고 더욱이 교육의 地域間 不均衡 現象은 人口의 都市集中이나 國民和合의 면에서 社會的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아울러 各級學校의 地域間 配置의 均衡과 地域間에 進學 및 學力隔差를 축소하여 地域間에 質的 隔差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고 學校平準化의 上向的 조정, 私學에 대한 財政支援의 衡平, 落後地域의 教育振興, 地方大學의 과감한 육성등의 정책적 과제들은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再吟味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기회균등이 制度 그 자체만에 있다기 보다는 학교가 지역사회를 얼마나 교육적으로 통솔할 수 있느냐 하는 學校의 地域社會統制의 受諾여하에 그 實際的 問題가 놓여 있으므로²⁶⁾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미는 교육기회의 不遇나 혹은 缺乏으로 인해서 差等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26) Kent, J.K., "The Coleman Report: Opening Pandora's Box," in Alfred Lightfoot(eds.), *Inquiries into the Social Foundations of Education*,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1972, pp.289-294.

교육의 개선은 制度만이 아니라 교육자들의 진정한 옹호자가 되었을 때라야만이 가능하다. 아울러 그것은 학생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學校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관심을 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회균등은 社會教育에 대한 政策的 支援을 더욱 擴大할 必要를 시사하고 있다.

學校는 일종의 人間 選拔處理組織體이다. 上向의 學校教育은 그 受容에 制限性이나 硬直性을 불가피하게 하며 學校外 教育人口를 낳도록 만들었고 또한 地域, 階層, 經濟的 不遇 등은 그들의 학교교육에의 접근을 환경적으로 저지시켰다. 그러므로 學習者의 自發性, 또는 自己 實現欲求 여하에 따라서는 正規學校 以外的 課程을 통해서도 年令이나 時期에 구애됨이 없이 충분히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報償教育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社會教育機關이 先進諸國에 비해 현저히 落後되어 있는 實情이므로 學校以外的 機會를 통해서도 특정한 知識이나 技術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各種社會教育機關들이 다양하게 설치·운영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들 教育機關들은 政府가 그 自願團體에 의해 設立運營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各級學校 및 大學이 地域社會住民들을 위한 社會教育 프로그램 및 活動에 적극 참여한 것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社會教育의 整備과 같은 制度的 基盤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되어야 한다.²⁷⁾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모든 教育機能이 平生教育理念에 부합될 수 있도록 또는 민주시민의 教育權을 적극 신장하는 취지에서 보아 學習社會의 形成을 위한 合理的 長期對策이 강구되어야 한다.²⁸⁾ 放送教育機關의 活用이나 社會的 認定(예컨대 學位授與등)을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나 地域別 社會教育機關의 형명한 設置들은 이를 政策化하는 보다 구체적인 과제들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들고자 하는 것은 기회균등을 위한 接近의 始發이 施設의 平準化나 教育經費의 同等한 支出, 또는 敎員과 學生의 適正配置 등과 같은 物量的 條件整備의 觀點이 중요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機會均等保障의 必要條件으로서 政策支援의 最優先課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우리 教育은 教育人口의 계속적 증가로 인해 學校·學級의 規模나 施設與件이 國際的으로 크게 落後돼왔음은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같은 學校 教育與件의 改善을 위해 韓國教育開發院이 제안한 政策方向 및 그 課題의 제시는 그 해결을 위한 한 지표가 되리라 보고 본다.²⁹⁾ 즉, ① 學校 및 學級規模의 適正化——過大規模學校 및 過密學級の 縮少와, ② 學級當 敎員數의 增員, ③ 校地絕對量 確保의 義務化, 그리고 ④ 學校施設 設備의 現代

27) 韓國社會教育協會, 社會教育制度의 比較, 서영사, 1980, pp.143-45.

28) 李中, “教育의 機會均等: 무엇이 문제인가?” 韓國教育學會編, 教育의 論壇, 載東文化社, 1973, pp.281-83.

29) 韓國教育開發院, 教育發展의 展望과 課題-1978~91-, 1978, pp.162-68.

化——學校建物, 施設, 設備의 現代化, 特別教室 및 附帶施設의 定備등이 그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교육의 機會均等은 한 個人的 成長이나 發展 뿐만 아니라 國家의 發展에 直결되는 중요한 政策課題이다. 民主社會의 發展이란 多數의 教育받은 市民의 質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富強한 國家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機會의 均등을 통한 人力의 發展에 主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대 國家의 特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民主社會의 建設을 志향함에 있어서 合意하고 있는 중요한 信念의 하나는 人間은 누구나 平等하게 被造된 獨特한 存在라는 것이며 그 獨自性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個個市民은 그 人種이나 性別, 階層, 또는 地域的, 經濟的 不利에도 불구하고 人間으로서의 完滿한 成長에 필요한 教育의 惠澤을 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民主教育이 志向하고 있는 理想이다. 이러한 教育의 機會均등을 우리는 각자 「自己成長에 필요한 固有關한 成長條件을 가지겠다는 主長」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教育의 機會均 등이 問題가 되는 것은 明文化된 法的 水準에서의 경우라기보다는 이것을 教育의 目標나 政策에 어떻게 反映하고 있느냐 하는, 바꿔 말해서 그 差別이나 不利 또는 隔差의 상황에서 問題의 초점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타당한 教育政策을 施行하기 위해서는 教育의 機會均等概念에 대한 충분한 理解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本稿에서는 그 理論的 基礎로서 平等 및 機會均 등이 무엇을 意味하는지의 그 概念의 發展을 考察하면서 아울러 教育政策에 어떤 示唆를 주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人間의 平等思想에는 상호 모순된 假定이 담겨 있다. 遺傳的 特質이나 個人差에 입각해서 볼 때 事實에 있어서 人間은 平等하지도 않다. 그러나 人間 尊嚴性의 견지에서 보아 同等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平等은 事實的, 記述的인 面에서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그 信念에 근거한 價值的 主張으로 이해되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平等의 概念은 絕對的 平等과 相對的 平等 및 主觀的 平等으로 또는 階級的 平等對 機能的 平等 및 心理的 平等對 社會的 平等이 次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機會均 등의 개념적 접근으로서 意味論的 見地에서 同一性和 適合(公正)性의 準거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또한 機會란 그것을 利用할 權利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個人에게 潛在可能性의 實現機會가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 權利所有 機會의 均等과 能力開發 機會의 均 등을 들 어 볼 수도 있다. 한편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法的, 制度的으로

그 實現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平等은 무의미한 것이므로 個人的 能力이나 個性에 따라 적합한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選擇의 保障과 그가 속한 地位條件, 環境 등의 社會的 不利에 구애됨이 없이 부당하게 差別을 받지 않아야 하는 惠澤의 保障도 그 개념적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차원이 되고 있다.

教育의 機會均等이란 한마디로 平等教育의 문제로서 그 政策的 接近은 그동안 義務教育이나 無償教育의 擴大라던지 共通教育課程의 提供, 또는 同一地域內의 非差別 政策이나 教育資源의 均等한 配分등으로 특징을 이뤄왔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학생의 同等한 學業成就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점차 깨닫게 됨에 따라 종래 投入의 均等を 중요시하던 觀點은 學生의 成就結果를 주목하는 產出의 均等を 강조하게 되었으며 그 基準을 長차의 社會的 參與를 위해 요청되는 最少必要(minimum needs)를 충족시키는 基礎教育(basic education)의 成就를 준거로 하는 기회균등의 접근방식으로 그 개념이 발전되고 있다.

기회균등이념의 教育實際의 구현에는 많은 문제가 개제되어 있지만, 그 概念探索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서 시사되는 몇가지 教育政策의 課題를 요약해 보았다.

첫째 教育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요 권리이므로 個個人的 성장발달을 충분히 도모하는 發達의 教育觀을 그 정책의 基調로 삼아야 한다. 이제까지는 대체로 엘리트 중심으로 教育機會를 제한해 왔음이 사실이다. 民主教育의 이상은 이러한 選拔의 教育觀에서 萬人을 위한 教育이라는 發達의 教育觀으로 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教育은 大衆化하는 開放的 教育制度의 模型을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삼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둘째로, 기회균등의 접근방식이 成果均等の 側面에서 문제시 되고 있으므로 學校成就의 質의 管理意識을 기회균등실현의 초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學生個個人的 潛在能力을 저버리지 않는 建設的 差別教育의 實現에도 과감한 정책을 펼 것이 요청된다.

셋째, 특히 기회균등 문제가 高等教育 또는 專門教育 영역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으므로 社會的 不利로 그 기회가 불우했거나 결핍된 靑少年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 惠澤의 保障에 政策的 配慮를 集中하여야 한다.

階層間 學力隔差의 解消나 教育機關의 地域的 不均衡에서 오는 不利를 겪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그 구체적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社會教育의 제도화 기회균등의 원리에 비추어 재음미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各種 社會教育施設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하고 學校의 接近에 환경적으로 제지당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自己 實現慾求의 여하에 따라서는 學校教育과 연계하여 그 기회를 보전할 수 있는 報償教育 프로그램을 적극 제도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教育의 기회균등이 시설이나 투입재정의 均衡화를 그 실현을 기도하고자 했던 접근입장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의 財政이나

施設의 物量的 條件整備는 教育의 기회균등보장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유의하여 최소한의 教育 財政確保를 위한 근원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컨대, 教育의 機會均등개념은 平等思想이나 教育哲學理念의 변천여하에 따라 그 개념정립 到 發展的 餘地를 남겨놓고 있으므로 教育의 機會均등실현을 위한 효율적 政策方案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 概念的 基底에 대한 계속적 탐색을 통해 그 타당한 적용을 시도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 Summary —

Some Implications for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Educational Policy

Soon-hyeong Lee

Examining the progress of the conception in this study, I will make it clear what equality, equal opportunity, and the equality of educational foundation, and what they suggest for the educational policy.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s been, in a word, the matter of equal education. The policy-approach of equal education have, generally, been characteristic of the exte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and gratuitous education, the offer of common curriculum, the indiscriminate policy in a region and the equal allotment of the educational resources and national finance in order to satisfy their desires. But people came to comprehend that all of these couldn't assure each one of students of successful attainment. So the input of educational equality has been changed into the output of educational equality emphasized on students' attainments. It must become a basic education necessary to their social participation in the future. The conception has come out all over approach of equal opportunity necessary to the minimum needs in their attainments.

Now, we can get the suggestion for educational policy by means of the conception of 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y.

First, the open-hearted education-system should be regarded as the first principle of education policy. Secondly, the approach of equal opportunity is so important matter in a side view of result-equality that the realization of equal opportunity should be centered on the quality control of school attain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make a decisive policy to realize constructive and differential education based on potentialities. Thirdly, especially the matter of equal opportunity becomes the object of discussion in higher and professional education, so that students should not be lacking in the chance because of class and

regional disadvantages, and unfortunate people should be able to overcome them with assurance under the assistance of policy. Viewed from socia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we should actively realize a compensatory education system for uneducated people to compensate the lost education opportunity according to the desire of self-realization. Last,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minimum of an educational finance and the readjustment of resources are necessary to equalize educational opportunity.

In short, there is yet room for development in the conception of equality in education-opportunity according to a thought of personal rights or an ideological transition of educational philosophy. Therefore, I think, in order to establish efficient policy plan for 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y, we should try to study the conceptional basis continuously and apply it properly.